



제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데이터 제공 안정성 확보 및 중단·변경 사전공지 의무화〉
■ 이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40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공데이터 제공의 안정성 확보	2
2.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변경 시 사전공지 의무화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준석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4. 27.
3. 회부연월일 : 2026. 4.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데이터베이스 내 값의 오류나 누락 등 내용의 정확성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가동률이나 응답시간 등 실질적인 제공의 안정성을 관리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공공기관이 시스템 개편이나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공공데이터 제공 방식을 사전 예고 없이 변경하거나 서버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데이터를 연동하여 활용하는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장치가 부재함.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안정성 기준 충족 의무를 신설하여 그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운영실태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거나 방식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공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데이터 제공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안정적인 데이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공공데이터 제공의 안정성 확보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가동률, 응답시간, 갱신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데이터 제공의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하거나 안정성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 <u>제공현황</u> 등 제공 운영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u><신설></u>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① ----- ----- ----- ----- ----- <u>제공현황, 안정성 확보</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공공데이터 제공 안정

현행	개정안
	<u>성 확보)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동률, 응답시간, 갱신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 제공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할 수 있다.</u> <u>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1항의 안정성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u>

현행법은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평가 및 개선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음¹⁾.

이러한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는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유효성·일관성·상호연계성 등에 대한 진단·평가를 통해 이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고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품질관리 체계는 주로 데이터 자체의 정확성 및 유효성 등 내용적 측면의 품질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공데이터가 단순히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것에서 나아가 오픈API 등을 통하여 민간의 각종 서비스와 실시간으로 연계·활용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데이터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자체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볼 필요가 있음.

특히 오픈API 등을 활용하여 공공데이터를 민간 서비스에 직접 연계한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시스템의 장애, 응답 지연 또는 데이터 갱신 지연 등이 발생하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는 민간 서비스의 장애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공데이터의 가동률·응답시간·갱신주기 등 제공 과정에서의 안정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서도 제공데이터의 품질 및 통계관리와 함께 오픈API 서비스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등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관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공공데이터의 가동률이나 응답시간 등 제공 안정성에 관한 별도의 기준 및 이에 대한 점검·시정 체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은 공공데이터의 가동률·응답시간·갱신주기 등 제공 안정성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정기적인 점검·시정요구와 연계하도록 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 공공데이터의 안정성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동률 및 응답시간은 데이터 자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등과 관련된 품질 지표라기보다는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의 성능 및 운영 안정성과 관련된 지표라는 점에서, 이를 공공데이터의 안정성 기준으로 규정할 경우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의 영역이 혼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행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은 데이터의 정확성·완전성·유효성·최신성 등 데이터 자체의 품질을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²⁾,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서는 가동률·응답시간·장애등급·복구시간목표 등을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기준으로 별도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³⁾.

2)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1조(품질관리체계 구축)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원칙 및 지침
2. 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3. 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원도구
4. 그 밖의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제22조(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목표
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3.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4.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과제
5.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일정
6.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소요 예산
7. 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에 포함된 추진 과제의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제23조(품질진단 및 개선)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서 수립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소관 공공데이터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소관 공공데이터를 새롭게 제공하거나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를 갱신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품질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공공데이터에 대해 오류를 수정하는 등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4조(품질관리 평가 및 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평가를 위해 평가대상, 추진체계, 절차 및 기간,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포함한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공공데이터의 정확성, 유효성, 일관성 등 품질관리 수준진단에 적용할 기준과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 및 평가기준·지표 등을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공공데이터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시정조치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결과 및 시정조치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8조(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 ① 법 제56조의4 및 영 제70조4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가동률·응답시간 등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안정성 기준으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정보시스템 안정성 관리체계와의 관계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양 제도 간 중복적인 점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데이터 제공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매년 실시되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⁴⁾에서도 공공데이터 제공 주기 준수율,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데이터값 관리 및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인력·조직 운영 여부 등을 이미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별도의 안정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시스템 장애등급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0조의5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상황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1. 장애등급은 정보시스템 등급과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서 1~4등급으로 산정한다.
2. 기반시설·공통장비 장애 등 동일 원인으로 복수의 정보시스템이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 중 가장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지정한다.
3. 장애등급은 장애 정도, 발생시간, 대상지역에 따라 하향 보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의 장애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애등급 산정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70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소관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전략위원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전략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제공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운영실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 점검체계를 신설할 경우 기존 평가체계와 일부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별도의 점검체계를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안정성과 관련된 지표를 추가·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변경 시 사전공지 의무화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공 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단 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공공데이터포털 등에 이를 공지하도록 하고, 시스템 장애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그 제공 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또는 변경 예정일 전 30일까지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한다.</u>
<u>④</u> (생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법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데이터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데이터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⁵⁾, 동법 시행령에서는 이에 따라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제공중단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⁶⁾.

그러나 현행 규정은 주로 특정 이용자의 이용행위 등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의 사후적인 통보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이 시스템 개편·유지보수 또는 데이터 제공방식 변경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제공하던 공공데이터의 제공 자체를 중단하거나 제공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목록 제외 요청을 한 경우 전락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제공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후 다시 제26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중단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을 통보받은 이용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다시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단사유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출한 중단사유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검토한 후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공공데이터를 단순히 열람하거나 일회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달리 오픈API 등을 민간의 정보시스템이나 서비스에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중단 또는 제공방식 변경이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등의 시스템 장애나 추가적인 시스템 개편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이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또는 제공방식 변경 사실을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공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데이터 제공방식의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민간의 서비스 장애 및 전환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사전공지 의무 규정은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28조는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본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공공기관이 이미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사후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사유와 이에 따른 절차를 규정한 조항에 해당함.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데이터의 제공 자체를 중단하거나 제공방식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또한, 현행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3개월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⁷⁾, 공공데이터의 변경·중단에 관한 사전적인 관리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

이에 현행 행정규칙에서도 공공데이터의 변경·중단과 관련한 사전통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사전공지 의무와 기존 규정 간의 중복성 및 정합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제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 제28조는 사후적인 제공중단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동 조에 사전공지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조문 체계상 부합하지 않고, 데이터 제공 중단·

7)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및 내용변경)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만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제공 중단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중단을 통보받은 이용자가 영 제2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다시 제공받기 위한 증명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제출한 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을 검토한 후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안정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의 일부 항목을 임의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포털에 연계·제공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또는 중단일 3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개월까지는 변경 전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시 30일 전 ‘사전 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해당 지침 등 하위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37